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6. 19.(월)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중찬)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경상북도교육감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취득재산 : 17,102,232천원

- 토 지(5건) : 2,556㎡ 695,961천원
- 건 물(1건) : 4,299.8㎡ 16,406,271천원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취득재산 목록】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기관명	건명	종별	소재지	지목 층수	면적 (㎡)			
1	경상북도 교육청 칠곡도서관	합계						17,102,232	
		경상북도 교육청 칠곡도서관 증축	소계(토지)					2,556	695,961
			토지 (매입)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26-8		전	1,941	515,141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27-1		대	132	39,811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기관명	건명	종별	소재지	지목 층수	면적 (㎡)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27-2	대	169	50,903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27-3	대	169	46,374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27-10	도로	145	43,732
			건물 (증축)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30-11	지하1층 지상3층	4,299.8	16,406,271

※ 추정가액 산정기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726-8, 727-1, 727-2, 727-3 / 표준지공시지가: 727-10
- 건물 - 사업비

나. 처분 변경(매각계획변경(용도 변경)) 재산 : 546,214천원

- 토 지(1건) : 9,429㎡ 389,417천원
- 건 물(1건) : 1,181.17㎡ 155,774천원
- 입목죽(1건) : 33주 1,023천원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처분 변경 재산 목록】

폐교명	폐교 연도	소재지	지번	종별	지목·구조	면적·수량	금액(천원)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장	2001	영천시 화남면 구전리	414-2	토지	학교용지	9,429㎡	389,417
			414-2	건물	교사동 외(8개동)	1,181.17㎡	155,774
			414-2	입목죽	향나무 외(5종)	33주	1,023
	계						546,214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시가표준액

- (구) 지곡초등학교용구분교장 처분 변경(매각계획변경(용도 변경)) 주요 내용

구분	기존 계획	변경 계획
매수요청자	영천시	(좌동)
활용계획	화남 구전리 마을만들기	별마중 휴스टे이 조성
사업기간	2022. 1. 1. ~ 2023. 12. 31.	2023 ~ 2024
매각계획	토지 9,429㎡, 건물 1,181㎡, 입목죽 33주	(좌동)
사업내용	지역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공간 제공	자연 친화적 휴식·힐링 특화 공간 조성 (글램핑장, 치유산책길 조성 등)

4.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2

5. 세부 현황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그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 및 토지면적이
 - 취득의 경우 20억 원 이상이거나 1건당 6,000㎡ 이상

-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거나 1건당 5,000㎡ 이상
-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임.

□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 내역은

○ 취득 재산은 1개 기관에

- 토 지(5건) : 2,556㎡, 695,961천원
- 건 물(1건) : 4,299.8㎡, 16,406,271천원

○ 처분 변경(매각 계획 변경(용도 변경)) 재산은 1개 기관에

- 토 지(1건) : 9.429㎡, 389,417천원
- 건 물(1건) : 1,181.17㎡, 155,774천원
- 입목죽(1건) : 33주, 1,023천원

□ 취득할 재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 [칠곡]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 증축

해당 건물은 건립 64년된 건물로 노후화의 정도가 심하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활동이 제한적이므로, 노후 도서관을 철거하고 증축(지하1층, 지상3층)하면서 증축 예정 부지(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26-8 등 5필지)를 매입하여 협소한 진입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시설공사비 등 171억 223만 2천원(교특회계 14,102,232천원+지방자치단체전입금 3,000,000천원(예정), 건물매입비 137,400천원 별도)을 반영한 것임.

○ [영천] (구)지곡초등학교용구분교장 매각 계획 변경(용도 변경)

영천시에서 (구)지곡초등학교용구분교장을 매입하여 당초에는 ‘화남 구전리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별마중 휴스페이 조성’으로 변경하여 자연 친화적 휴식·힐링 특화 공간을 조성(글램핑장, 치유산책길 조성 등) 하려는 것임.

6. 검토 의견

○ [칠곡] 경상북도교육청칠곡도서관 증축

-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은 1959년 9월 24일 칠곡교육청으로 건립되어 1985년 공공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중이며, 정밀안전도 검사 결과(2023. 4. 7.) 건물의 콘크리트 중성화 심도가 D, E 등급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따른 보수, 보강 비용 및 경과 연수(64년)에 따른 내구연한, 건물의 구조 안전성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거 후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명을 받았으며,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로 인하여 자료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활동도 제한을 받고 있음. 또한, 도서관 입구 차량 교행이 어려워 이용자 안전을 위한 출입구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도서관 인근 사유지 5필지를 매입하여 협소한 진입로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문화 복합 공간 형태의 규모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현대적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천] (구)지곡초등학교용구분교장 매각 계획 변경(용도 변경)

- (구)지곡초등학교용구분교장은 영천시 화남면 구전리 414-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폐교되었고, 2018년까지 잔디축구경기장 및 놀이시설로 활용되었으나 그 이후는 미활용상태이며, 건물 전체적으로 천장 누수가 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제326회 임시회(2021.10.14.)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지곡초등학교용구분교장 매각 건은 지역문화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공간 제공과 특산물 판매점 설치 등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화남면 구전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의결(원안 가결) 되었으나, 영천시가 자연 친화적 휴식·힐링 특화 공간 조성 (글램핑장, 치유산책길 조성 등)을 위한 「별마중 휴스टे이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다시 매입을 요청하여 재심의하는 사안으로, 주변이 농지이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체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해당 폐교의 특성에 더 적합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발전 및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 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하락>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